



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 〈 의료기관 〉

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, 국세행정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
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을 일일이 수집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**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「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」**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귀 기관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대상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, '21년 귀속 자료를 '22년 1월 7일(금)(부득이한 경우 1월 13일)까지 **제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

제출 자료	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(보험 + 비보험)
자료 제출 기한	'22. 1. 7.(금) (부득이한 경우 1.13.(목))
자료 제출 방법	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로그인 조회/발급 > 연말정산 간소화 > 영수증 발급처 > 소득·세액공제 자료 제출

2021년 12월 일

세무서장 (관인생략)

자세한 제출 요령은 뒷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관련 문의는
【☎(국번 없이) 126 ⇨ ①홈택스 ⇨ ⑥연말정산간소화】로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'21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요령

1 제출 대상 기관

-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(진찰·치료·질병예방을 위한 비용)
- 「약사법」에 따른 의약품(한약 포함) 취급 기관 (치료·요양을 위한 비용)

2 제출 자료

- '21년 귀속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(보험+비보험)

※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'자료제출 제외(거부) 신청' 한 의료비 자료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.

※ 미용·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료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.

3 자료 제출 방법



-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>자료실 (자료번호 468) [연말정산간소화] '21년 귀속 소득·세액 공제 자료제출 방법을 참조

4 자료 제출 기한

	내 용	일 정
자료제출기한	원칙	'22.1.7.(금) 22시
	부득이한 경우	'22.1.13.(목) 22시
	수정·추가 제출하는 경우*	'22.1.15.(토)~1.18.(화) 18시~22시*

* 간소화 서비스 개통(1.15.) 이후로 접속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시간 이후에 제출 가능

5 유의사항

- 제출한 자료 100건 중 오류 10건이 포함되어 이를 수정하여 제출할 경우, 반드시 수정분 10건을 포함한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엑셀 파일은 5MB이하의 경우만 가능, 그 이상은 텍스트로 변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